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2434

발의일자: 2023. 11. 15.

발 의 자 : 정재동 의원

찬 성 자 : 이인식, 고성미 의원

1. 개정이유

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장기재직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 폐지에 따라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(안 제14조 제2항)

나. 30년 이상의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 확대(안 제14조 제4항)

- 30년 이상 : 현행 20일 → 개정 30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7조의7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일부개정 조례안 : 별도 첨부

2) 신・구조문대비표: 별도 첨부

3) 입법예고 : 2023. 11. 16. ~ 11. 22.

4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 제2항 중 "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"을 "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및"을 "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,"로, "각각 20일"을 "30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특별휴가) ① (생 략)	제14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	②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
<u>령」</u>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	및 운영에 관한 법률
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(시간선	
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)이 출	
석수업에 참석할 경우 영 제7조	
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	
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	
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	4
10년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	
직기간 중 5일, 10년 이상 20년	
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	
간 중 10일, 20년 이상 30년 미	
만 <u>및</u>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	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
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<u>각각</u>	<u>간 중 20일, 30일</u>
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	
며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	
장이 따로 정한다.	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현행 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(제정) 2022.01.12 조례 제1232호 (일부개정) 2023.01.10 조례 제1310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과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 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복무선서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「지방 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.
 - ③ 선서의 방법,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.
- 제3조(책임완수)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.
- 제4조(비밀엄수)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 - 1.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
 - 2.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 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,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
 - 3.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
 - 4.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 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제5조(근무기강의 확립)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.
 -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6조(친절과 공정)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

- 고 신속 ·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.
- 제7조(파견근무)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이 지휘·감독한다.
 -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.
 - ③ 국외의 정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재외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른다.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.
- 제8조(겸임근무)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이 지휘·감독한다.
 -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.
- 제9조(복장과 제복)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 야 한다.
 -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0조(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) 법 제27조제2항제2호,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.
- 제11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,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.
 -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

- ④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12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·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.
 -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.
- 제13조(병가)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 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지각·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,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.
 - 1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
 -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14조(특별휴가) ① 의장은 공무원이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 야 한다.
 - ②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(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)이 출석수업에 참석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.
 -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〈개정 2023.1.10.〉
 - ④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,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〈개정 2023.1.10.〉
 -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,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

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

- 1. 육아시간은 사용한 날(日)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,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
- 2. 해당 월(月)에 속한 일(日)을 계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는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
- 3. 월(月)단위 이상 연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 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(다만,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(月)에 속한 일 (日)을 계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)
-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(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사용 시 일(日)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또한,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하거나 허가할 수 없으며,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
-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-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<신설 2023.1.10.> 제15조(휴가기간의 초과)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.
- 제16조(공무외의 국외여행)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.

부칙(제1232호, 2022.01.12.)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1301호, 2023.1.10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